

제253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  
2006.9.4~9.15(12일간)

## 專門委員 檢討報告

충청북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企劃行政委員會

## 충청북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専門委員 檢討報告書

### 1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### 2. 제출 및 회부일자

- 가. 제출일자 : 2006년 8월 28일  
나. 회부일자 : 2006년 8월 29일

### 3. 제안이유

고액·상습 체납을 방지하기 위하여 1억원 이상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제도를 신설하고, 체납자 정보공개개상자 심의를 위해 지방세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자 함.

### 4. 주요내용

- 가. 지방세 체납자 명단공개 제도 실설(안 제9조의3)

■ 대상 : 1억원이상 고액·상습 체납자

- 나.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설치(안 제9조의4)

■ 구성 : 위원장(행정부지사) 포함 9인 이내

■ 기능 : 체납자의 정보공개 여부 심의

### 5. 검토의견

■ 충청북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.

■ 동 개정조례안은 2005년 12월 31일 개정된 지방세법 제69조의2 제1항에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지방세(결손처분한 지방세로써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것 포함)가 1억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한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, 동법 제2항에 체납자의 체납정

보 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각 자치단체에 두도록 하는 사항과 동법시행령 제52조의2에 심의위원회의 구성·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이를 근거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

- 국세의 경우에는 2004년도부터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66조에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국세 10억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였고,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설치근거가 마련되어 이미 운영하고 있으며 고액·상습 지방세 체납자도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명단의 공개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 사항을 보완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이견없습니다.
- 다만 정보공개대상이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지방세(결손처분한 지방세로써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것 포함)가 1억원 이상인 체납자로서 시장·군수의 요청을 받아 도지사가 처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세가 1억원 이상 체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시·군에 체납액이 분산돼 있을 경우에 공개대상이 되는지와 만일 공개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그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정보공개대상자 범위에 대한 제외규정과 동일한 사안에 대한 판단기준, 공개대상명단 선정기준일, 공개시기, 처리기준 등에 대해서는 보충설명이 필요함.

붙임 : 충청북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.